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b>보 도 참 고 자 료</b>		
	보고	2019. 2. 1.(금) 조간	배포
담당부서	여신금융감독국	이상민 국장(3145-7550), 류영호 팀장(3145-7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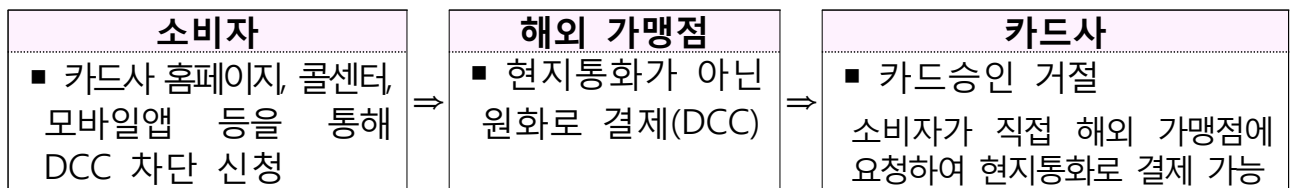
## 제 목 :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1 출국 전 유의사항

① 해외에서 물품 구매시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높은 원화 결제수수료(이용금액의 3~8%)를 부담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전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음

#### DCC 사전차단시스템 이용절차(예시)



\* 참고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도 결제할 수 있음

#### 민원사례

해외 여행지에서 쇼핑을 하던 A씨는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을 발견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던 중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물어봐 별 생각 없이 원화로 결제하였으나, 귀국 후 카드 대금 청구서에 \$1,050이 원화로 청구되어 자세히 확인해보니 가방 가격 \$1,000외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5%) \$50이 포함되어 있어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0을 추가 부담하였음

② 카드 위·변조,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출국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 되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

\* 다만 해외 여행지에서 유심칩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출국전 데이터 로밍 차단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③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전 카드사에 문의 하여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할 필요

#### 민원사례

직장인 B씨는 해외여행중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으나, 레스토랑 직원은 서명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으나 비밀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였음

④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출국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할 필요

⑤ 카드 분실·도난시에 대비하여 해당 카드사의 연락처(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할 필요

\*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타 카드사도 일괄하여 분실신고가 이루어짐

## 2

### 해외 여행 중 유의사항

- ① 해외 노점상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결제과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민원사례

직장인 C씨는 해외여행중 노점상에서 기념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 등을 요구한 후 신용카드를 한참 살펴보더니 도난 카드로 의심되어 다른 곳에서 카드 조회 후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를 가져갔으며, 그날 이후 본인카드가 불법 복제되어 수차례 부정사용됨

- ② 해외 카드 결제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밀번호 유출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고 필요

#### 민원사례

가족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간 D씨는 해외 관광지에서 현지인 3~4명이 한국에 대해 잘 안다며 말을 걸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등 D씨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D씨가 카드결제를 위해 입력한 비밀번호를 훔쳐본 다음, D씨의 카드를 소매치기하여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부정사용됨

## 3

### 귀국 후 유의사항

-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해외에서의 카드 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 방지 가능

\* 동 서비스 신청시 카드사와 출입국 관리사무소간 카드소지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가 공유되며 카드사용자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카드사는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함

회사명	국 내	해 외
롯데카드	1588-8300	82-1588-8300, 82-2-2280-2400
비씨카드	1588-4000, 1588-4515	82-2-950-8510
삼성카드	1588-8900	82-2-2000-8100
신한카드	1544-7000, 1544-7200	82-1544-7000, 82-2-3420-7000
우리카드	1588-5300, 1588-9955	82-2-2169-5001
하나카드	1800-1111	82-1800-1111
현대카드	1577-6200	82-2-3015-9200
KB국민카드	1588-1788	82-2-6300-7300
NH농협은행	1644-4000	82-2-6942-6478
한국씨티은행	1566-1000	82-2-2004-1004
IBK기업은행	1566-2566	82-2-330-5701
SC제일은행	1588-1599	82-2-950-8510
대구은행	1566-5050	82-53-742-5050
부산은행	1544-6200	82-2-950-8510
경남은행	1600-8585	82-2-950-8510
전북은행	1588-4477, 1522-3311	82-63-270-8585
수협은행	1588-1515, 1644-1515	82-2-2013-0000
광주은행	1588-3388	82-62-239-5000
제주은행	1588-0079	82-64-759-2002